

- 다솜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가.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나. 이용계약을 통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事前)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나. 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해당 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 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달 이용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納付)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이튿날로 한다.
- 마. 이용료의 부담은 센터에서 안내한 계좌로 이체나 cms를 통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納付)할 수 있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자에게 표준약관(계약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시간, 횟수 등의 변경 포함)를 가진다
 - 2) 수급자의 건강, 식사, 생활 편익에 대한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진다.
 - 4) 수급자의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를 통해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 4)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 5)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 6)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 가. 수급자 본인 외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 [비용의 부담]

-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賠償)책임, 면책(免責)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나.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나.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다.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라.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배상보험]

센터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2025. 0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 2019.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18.08.01.)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 일반		15%	20%
□ 기초수급권자		0%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대상	보험료 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감경률	60%	40%
	본인 부담률	6%	9%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